

# 1. 교원인사규정 신규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사유
<p>제 10 조(특별임용) ① (생략)</p> <p>② 총장은 탁월한 교육 및 연구업적을 성취하였다고 인정되는 전임교원 또는 교외인사에 대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좌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. 또한 본 대학 정년보장교원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<u>POSTECH Fellow</u> 또는 학과특임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.</p> <p>③ 명예, 석좌교수, <u>POSTECH Fellow</u>, 학과특임교수 임용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</p>	<p>제 10 조(특별임용) ① (현행유지)</p> <p>② 총장은 탁월한 교육 및 연구업적을 성취하였다고 인정되는 전임교원 또는 교외인사에 대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좌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. 또한 본 대학 정년보장교원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<b><u>POSTECH University Professor</u></b> 또는 학과특임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.</p> <p>③ 명예, 석좌교수, <b><u>POSTECH University Professor</u></b>, 학과특임교수 임용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</p>	<p>2016-6 회 이사회 반영: 명칭변경 (POSTECH Fellow → POSTECH University Professor)</p>
<p>제 35 조(의원면직) 본인이 면직을 청원할 때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(신설)</u></p>	<p>제 35 조(의원면직) 본인이 면직을 청원할 때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.</p> <p><b><u>제 35 조의 2(의원면직의 제한) 제 35 조에도 불구하고,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제 1 호·제 3 호 및 제 4 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 79 조에 따른 파면·해임·강등·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(이하 "중징계"라 한다)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</u></b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b><u>1.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</u></b></li> <li><b><u>2. 법인 정관 65 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</u></b></li> <li><b><u>3. 감사원·검찰·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</u></b></li> </ol>	<p>사립학교법 제 54 조의 5 반영 : 징계처분을 피하기 위한 사립학교 교원의 의원 면직 제한</p>

	<u>4.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</u>	
	<u>부칙</u> <u>이 규정은 2017년 1월 19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</u>	